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- 72호
특허청 공고 제2024 - 25호

「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」 (예비)재창업자 모집 공고

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(예비) 재창업자를 발굴하고,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 「**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(예비)재창업자 모집계획**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·특허청장

1.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**(예비)재창업자를 발굴·지원**하여 **성공적인 재창업 지원**

□ 지원규모 : 282명 내외

구분	지원대상	지원규모	지원금액	지원기간	기업부담금
일반형	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	267명 내외	최대 100백만원 (평가등급별 차등지원) * 평균 42백만원	8개월 내외	총사업비의 25% 이상 (현금 5% 이상, 현물 20% 이하)
IP전략형	IP(지식재산)를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	15명 내외			

*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(예비)재창업자 40% 내외 선발 예정
** 청년 기준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4. 2. 1. 이후 출생자 (1984. 2. 1. 출생자 포함)
*** 일반형,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

○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,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 및 주관기관(일반형, IP전략형) 직접 또는 간접 지원

2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
□ **신청자격 :*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**"재창업"**에 해당하며, ① **일반형**, 또는 ② **IP전략형**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**(예비)재창업자**

* **재창업 :**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

< 세부자격 >

구분	내용
① 일반형	○ **예비재창업자** : 사업 공고일('24.1.31.) **전('24.1.30.)까지 중소기업을 폐업**한 자로서,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상 재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이 가능한 자 ○ **재창업자** : 중소기업을 폐업하고,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'21.2.1.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) -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,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*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의 사업개시일 기준 - 공동대표(각자대표)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* 공동대표(각자대표)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참여 동의서를 제출 (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)
② IP전략형	○ "예비재창업자", "재창업자" 자격요건은 "① 일반형"과 같음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(전용실시권 포함) ○ **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 (등록건만 인정)** ○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* 단, 개인사업자(예비재창업자 포함)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

① 단, **"포괄양도양수"**를 통한 **"개인 → 법인 전환"**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**지원대상은 본점(사) 기준임에 유의 (지점(사)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)**

② **주관기관 : (일반형)** 일반형 6개 주관기관 중 택 1,
(IP전략형) 특허청 IP-C&D 전략지원사업 주관기관 선택

③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신청 시 주관기관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계획서 양식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탈락 등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○ **'신용회복위원회'**를 통해 **'채무조정* 절차를 진행 중'**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(단, 최종 선정 전까지 '채무조정합의서'를 제출하여야 함)

*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

** "신용회복위원회"를 통해 체결 완료된 "채무조정합의서"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 선정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(협약)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

*** **채무조정제도 문의 : 신용회복위원회 (☎ 1600 - 5500)**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(기업)

순번	신청(지원) 가능 예외 사항
1	•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
2	• "신용회복위원회"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
3	• "법원"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(기업)

* 단, 최종선정(K-Startup 선정자 공지)전까지 **'신청(지원) 가능 예외 사항'**에 해당하는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• 국세(소득세, 법인세, 부가세 등)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,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(관련법령 :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, 시행령 제99조의 6)

* 단, 최종선정(K-Startup 선정자 공지) 전까지 **'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'**를 제출하거나 **'완납'**한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③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43조(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)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(기업)

④ 동일 연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(기업)(동시수행 불가)

•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** 예비창업패키지, 초기창업패키지, 창업도약패키지, 초격차스타트업1000+ 프로젝트,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, 창업중심대학,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,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,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,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, 신사업창업사관학교,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

* ① 동일 연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② (연도 무관)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및 지원 가능

⑤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 (기업)

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
⑦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(세부내용「붙임」참조)

* 일반유흥주점업 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 (56212)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(91249),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. 세부 지원내용

□ **공통지원** (일반형 및 IP전략형)

○ **(사업화 자금)** 최대 100백만원 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선정 후 8개월 이내 (~'24.12월))

* 제품·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

○ **총사업비(100%) 구성**

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(예비)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	
		현금	현물
100%	총사업비의 75% 이하	총사업비의 5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

* 현물 :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

< 사업비 구성 예시 >

총사업비 (A+B)	정부지원사업비 (A)	(예비)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(B)	
		현금	현물
134백만원	100백만원	8백만원	26백만원
100%	75% 이하	5% 이상	20% 이하

○ **(성장촉진 프로그램)** 전담·주관기관에서 (예비)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, 교육·멘토링, 네트워킹 등 지원 (주관기관별 상이)

< 지원예시 및 주관기관 >

구분	지원내용
민간연계	•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
성과촉진	• 매출·고용·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(전시, 판로, 투자 IR 등) 프로그램
네트워크	•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(멘토·멘티, 기술컨설팅, 경영자문 등)
기타	•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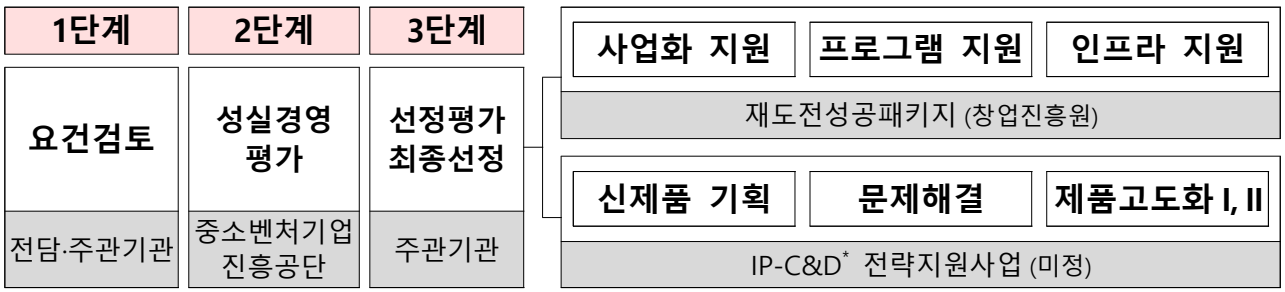
일반형 (청년, 중장년)	IP전략형	교육형
• (재)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• (재)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• 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• 성남산업진흥원 •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• 원광대학교	• 특허청 IP-C&D 전략지원사업 주관기관	• ㈜렛츠 • 씨엔티테크㈜ • (유)제피러스랩

□ IP전략형 (IP-C&D 전략지원사업)

「**IP전략형 (IP-C&D 전략지원사업)**」은 **특허청 협업사업**으로 **신청자격, 평가 및 선정기준** 등이 **일반형과 다르오니** 반드시 **IP전략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**하여 주십시오.

○ **(개요)** (예비)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(IP)의 제품화 및 사업화,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

<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(요약) >



* IP-C&D : Connect & Development

○ **(지원내용)**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 (붙임파일 확인)

구분			지원내용	지원규모 / 기간
사업명	세부과제			
재도전 성공패키지	사업화 지원		▸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, 멘토링, 교육 등을 지원	100백만원 / 8개월
IP-C&D 전략지원사업 (컨설팅)	신제품기획		▸제품기획 및 시장 수요조사, 제품 사용 시나리오, 테스트 목업 등 검증	최대 90백만원① / 8개월
	문제해결		▸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 고도화 솔루션 제공, 설계·워킹 목업 등 검증	
	제품 고도화	Ⅰ	▸사용성·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·워킹 목업 등의 검증	
		Ⅱ	▸기존 보유 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·설계·워킹 목업 등의 검증	최대 50백만원② / 4개월

* **IP-C&D 지원사업**(특허청 협업)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, 문제해결, 제품고도화 Ⅰ·Ⅱ **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**

** **①, ② 검증 선택 비용**은 **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자금**에서 **활용 가능**

• **후속지원 :** ① 투자유치, 전시회 등 지원, ②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,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추천 자격요건 획득 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원

1 **(재도전성공패키지)** 제품·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(시제품 제작, 마케팅비 등) 및 프로그램·인프라 지원 (일반형과 동일)

* **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'IP_C&D 전략지원사업'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**

2 **(IP-C&D 전략지원사업)** 신제품기획, 문제해결, 제품고도화 I·II 지원

* 세부 유형은 대상 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, 적정 세부 과제는 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

○ **(신제품기획)** IP 분석정보 활용,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(제품·서비스·비즈니스 모델) 기획,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

* 진행절차 : ① 과제 기획 → ② 고객인사이트 분석 → ③ 타분야 기술 도출 → ④ 융합제품 기획 → ⑤ 검증

○ **(문제해결)**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*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

* 장치, 공정,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
** 진행절차 : ① 과제 기획 → ② 제품문제 정의 → ③ 해결안 도출 → ④ 검증

○ **(제품고도화 Ⅰ·Ⅱ)**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선 및 검증 지원

* 진행절차 : ① 과제 기획 → ② 디자인 컨셉도출 → ③ 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→ ④ 제품디자인 개선 → ⑤ 검증

□ **자기부담사업비 :** "IP전략형"에 최종선정된 (예비)재창업자는 자기부담사업비(기업부담금)*를 **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**

* **자기부담사업비(기업부담금) :** ① "IP전략형"은 특허청 IP-C&D 전략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, ② "재도전성공패키지"는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

< 자기부담사업비 기준표 (예시) >

구분		IP전략형 (IP-C&D 전략지원사업)	재도전성공패키지
기업부담율 (자기부담사업비)	현금	10% 이상	5% 이상
	현물	10% 이하	20% 이하
합계		총 20%	총 25%

4. 사업 신청

□ 신청 · 접수기간

○ **(공고기간)** 2024. 1. 31.(수) ~ 2. 29.(목)

- **K-Startup 접수기간 :** 2024. 2. 15.(목) ~ 2. 29.(목), 15:00 까지

* **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** 지역별 주관기관을 **선택하여 신청 가능**

** 주관기관 명단(지원 프로그램)은 2월 초 본 사업공고에 첨부파일로 안내

※ 신청·접수 시 유의사항

1)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**이 **신청**하여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
2) 사업 신청 시 **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**하여 신청하며,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
3)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'을 미리 진행**하는 것을 권장
 * "제출완료"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
4)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**
5) **접수마감일 15:00 정각에 접수가 마감**되며, 15: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(개인정보 동의 등 완료 후, 기본정보 입력 단계)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:00까지(유예시간) 작성 항목 수정,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허용
 * 유예시간 17:00 마감 이후 새롭게 신청·접수 시작은 불가

□ 신청방법 : K-Startup (www.k-startup.go.kr) 온라인 신청

① **K-Startup 접속**	② **회원가입(개인회원) 및 로그인**	③ **사업신청관리 클릭**
⑤ **사업신청 약관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등 체크**	④ **「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」 (예비)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신청**	
⑥ **기본정보 입력**	⑦ **사업계획서 업로드** (용량제한 '30MB' 유의)	⑧ **제출** ('마이페이지'에서 신청 확인)

○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

* **실명인증 :**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 :**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1

5.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절차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최종선정
신청자격 검토, 성실경영 평가	평가위원회 서류평가 (가점 등 반영)	평가위원회 발표평가 (발표 및 질의응답)	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
전담·주관기관	주관기관	주관기관	전담·주관기관

※ **성실경영 평가 :**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
*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"성실경영 평가" 탈락 시 미선정

*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(제외)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

** 평가 결과별 이의신청은 결과통보(공지)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 신청 가능

① **(요건검토)** (예비)재창업자 신청자격 등 검토

② **(서류평가)** 사업계획 평가* → **선정규모의 2.5배수 내외 선발**

* 공통서류, 가점 및 실적 등의 내용은 **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**으로 **평가**

③ **(발표평가)** 사업계획 발표, 질의응답 병행 평가 → **최종선정**

< 유형별 평가항목 >

구분		평가항목		세부내용
일반형	서류·발표	**문제인식** (Problem)		① 폐업(실패) 원인 분석, ② 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, ③ 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
		실현가능성 (Solution)		① 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, ② 시장(고객)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, ③ 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, 기술혁신성
		성장가능성 (Scale-Up)		①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, ②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, ③ 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
		팀 구성 (Team)		① 재창업자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 (내부), ② 외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 (외부)
IP전략형	서류	정량	**기업현황**	① 일반현황, ② 기술개발 역량, ③ 인증 및 수상
			지식재산활용	① 지식재산 등록현황, ② 직무발명 보상현황
		정성		① 지원의 적합성, ② 사업화 가능성
	발표			① 제품·기술 우수성, ② 기업역량, ③ 제품시장성, ④ 과제적합성, ⑤ 지원기대효과

④ **(최종선정)**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사업비 확정

□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
<tr><td>평가 면제
(프리패스)</td><td>①「도전! K-스타트업 2023」 왕중왕전 '대상' 수상자</td></tr>
<tr><td>서류평가 면제
①~⑤</td><td>①「도전! K-스타트업 2023」 왕중왕전 진출팀 (중소벤처기업부 주최)
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
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
④ 2023년도 재도전 IR 수상자 (창업진흥원 공고 제2023-45호, '23.6.28.)
⑤ 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수상자</td></tr>
<tr><td>서류평가 가점
①~⑦ 항목별
(가점 총 5점 한도)</td><td>① 고용위기 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,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(예비)재창업자 (각 1점)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정기간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>고용위기지역</td><td>'23.01.01.~'24.06.30.</td><td>· 경상남도 거제시</td></tr>
<tr><td>산업위기
선제대응지역</td><td>'22.10.31.~'24.10.30.</td><td>· 경상북도 포항시</td></tr>
<tr><td>지방중소기업
특별지원지역</td><td>'20.02.27.~'25.02.26.</td><td>· 강원(2) : '북평국가', '북평일반'산업단지,
· 전북(2) : '김제지평선', '정읍첨단과학'일반산업단지
· 전남(6) : '나주일반', '나주혁신', '장흥바이오식품', '강진', '동함평일반', '세풍일반'산업단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중소기업
특별지원지역</td><td>'23.01.26.~'25.01.25.</td><td>· 부산(1) : 금사 공업지역
· 포항(5) : 포항철강 1단지, 2단지, 3단지
4일반산업단지,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</td></tr>
<tr><td>'23.03.21.~'25.03.20.</td><td>· 전남(2) : '담양일반', '대마전기자동차'산업단지</td></tr>
<tr><td>'23.11.21.~'25.11.20.</td><td>· 광주(4) : '하남일반', '진곡일반', '평동1,2차일반', '평동3차일반'산업단지</td></tr>
<tr><td>'23.12.30.~'25.12.29.</td><td>· 충남(1) : 주포제2농공단지</td></tr>
</table>
- 예비재창업자 :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
- 재창업자(개인, 법인)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(점) 소재지 기준
* 고용위기지역 관련 :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92호 (2023.12.29.)
** 산업위기선제대응특별지역 관련 :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904호 (2022.12.23.)
***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: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21호 (2020.2.27.)
****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238호 (2023.4.14.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531호 (2023.11.21.)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호 (2024.1.9.)
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(1점)
③ K-Startup 창업에듀 '재도전' 교육 30차시(8시간 내외) 이수자 (1점)
④ '23년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(1점)
* 문화체육관광부 주최, '수료증' 제출 시 가점 인정
⑤ '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10시간(온·오프라인 포함) 교육 이수자 (1.5점)
⑥ '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20시간(온·오프라인 포함) 교육 이수자 (2점)
*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⑥번 항목 가점 적용 (⑤+⑥ 중복적용 불가)
⑦ '23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 (중소벤처기업부 주최) (3점)</td></tr>
</table>

* 서류평가 면제 대상도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(미충족시 탈락)

**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은 **본 사업 신청자 기준**이며, 접수 마감일**('24.2.29.까지)**까지 **증빙자료 제출**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6.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

□ 선정자 의무

○ 선정자는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및 본 사업「세부관리 기준」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(최종 선정자 대상 지침·기준 별도 안내)

○ 선정자는 기한 내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 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

○ “예비”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상 재창업(사업자 등록)을 하여야 함

○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, 점검,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○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,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(정의)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·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
* 미유지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○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며,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공공재정환수법)」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

*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

○ 제3자 부당개입*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음

* 제3자 부당개입: 통상의 자문,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,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

○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,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

○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,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, 제재조치*를 받을 수 있음

*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

○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2 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*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: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

** 주요업태는 추가·변경될 수 있음

< 참고 :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>

제5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(注意)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

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·기준 등에 따르며, 사업신청·선정 이후 관련 지침·기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(예비)재창업자에게 있음

*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, ②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③ 재도전 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

○ 신청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“성실경영 평가”를 받아야 함

○ 신청자는 과거 모든 폐업기업에 대한 실질기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담·주관기관의 자료제출(폐업사실증명원 등)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

* 다수 폐업자의 경우 모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일부 누락, 미제출, 비협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

○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출서류 간 기재 내용(개인, 법인, 예비 등)이 상이할 경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으로 함

*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담·주관기관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7. 추진절차 및 일정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모집 공고 및 신청·접수	⇨	요건검토, 성실경영 평가	⇨	선정평가 (서류평가)
K-Startup 홈페이지		주관기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	주관기관
· **(공고)** '24. 1. 31. ~ 2. 29. · **(접수)** '24. 2. 15. ~ 2. 29.		· **(요건)** '24년 3월 초 · **(성실)** '24년 3월 ~ 4월		'24년 3월 중~ 3월 말

⇩

협약설명회	⇦	최종선정자 공지	⇦	선정평가 (발표평가)
주관기관		K-Startup 홈페이지		주관기관
'24년 4월 말 ~ 5월 초		'24년 4월 중		'24년 3월 말 ~ 4월 초

⇩

협약체결	⇨	사업수행 (협약기간)	⇨	최종점검 및 최종평가
3자 온라인 협약체결		(예비)재창업자		(예비)재창업자
'24년 5월 초 ~ 5월 중		~ '24년 12월 말		'25년 1월 ~ 2월

* 대·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** 협약설명회는 전담+주관기관 연합설명회(사업 설명 및 주관기관 소개, 사업비 계좌 개설, 재창업자 대표 선포식, 네트워킹 등) 진행 예정 (5월 초)

□ 주관기관 사업설명회

○ **(일정)** 2024. 2. 6.(화) ~ 2. 28.(수)

* 사업설명회 관련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

8. 문의처

□ 신청 · 접수 시스템(K-Startup) 및 사업 문의

구분		기관명	연락처
신청·접수 및 시스템(K-Startup) 문의		중소기업통합콜센터	국번없이 1357
정책문의		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	044-204-7625, 7626
사업문의		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	044-410-1761, 1763, 1766, 1769
사업 문의	**일반형** 주관기관 (6개)	(재)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	033-248-7953, 7958, 7961
		(재)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02-739-9370, 8168, 9317
		(재)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	044-998-0734, 0238, 1021
		성남산업진흥원	031-782-3056, 3070
		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	053-950-6096
		원광대학교	063-850-7458, 7474, 7469, 7471
	IP전략형 (특허청)	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	042-481-8312
교육 문의	**교육형** 주관기관 (3개)	㈜렛츠	070-4772-4499
		씨엔티테크㈜	02-3152-0934
		(유)제피러스랩	070-4243-7808

붙임 1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

□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

비목	정의
재료비	·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외주용역비	·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기계장치 구입비 (공구·기구, 비품 등)	·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·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
인건비	· 창업기업 소속직원 (신규 또는 기고용)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(대표자 지급불가)
지급수수료	·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*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 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
여비	· 창업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
교육훈련비	·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
광고선전비	·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33조~제42조(창업기업 사업비 비목 등) 참고, 비목별 세부설명 및 집행기준 필히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요망

□ 지원제외 대상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붙임 2 〔채무조정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
□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
('24.1월 말 기준)

지역	센터명	주소
서울 (7)	중앙	·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(서울신문사) 6층
	관악	·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
	광진	·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「사무동」5층
	노원	·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 빌딩 3층
	양천	·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
	강남	·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5, 3층(라임타워)
	서초	·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대한법률구조공단
경기 인천 (13)	인천	·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
	계양	·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, 2층 (삼환1빌딩)
	수원	·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KT&G코스모수원빌딩 8층
	의정부	·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16 (의정부동 141-3) 한화생명빌딩 4층
	고양	·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
	안산	·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
	성남	·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 예미지 빌딩 2층
	안양	·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70 7층
	부천	·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
	평택	·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(신대동), 2층
	구리	·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
	김포	·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 2층 (김포고용센터건물 2층)
	하남	·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, 하남고용복지센터 3층
부산 대구 울산 경상 (13)	부산	·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
	사상	·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
	대구	·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(구, 교보생명빌딩) 8층
	대구	·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, 하나은행 3층
	창원	·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, 삼성빌딩 3층
	울산	·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, 옥산빌딩 2층
	포항	·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231 동양빌딩 6층 (포항e요양병원 옆 건물)
	구미	·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
	수영	·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1-5 메디세움빌딩 13층
	거제	·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,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
	안동	·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(태화동 715-3) 안동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
	경주	·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
	진주	·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63,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(장대동)

지역	센터명	주소
강원 (4)	강릉	·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5층
	원주	·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
	춘천	·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45 2층
	속초	·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
대전 충청 (6)	대전	·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, 대전신용보증재단BD 3층 (대흥동 493-4번지)
	천안	·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
	청주	·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 미래에셋증권빌딩 4층
	충주	·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(봉방동 15-2) 세일빌딩 2층
	홍성	·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2층 204호 (신경리 558, 센트럴 타워)
	당진	· 충청남도 당진시 천변1길 224-14 (대덕동 1689) 신화빌딩 2층
광주 전라 (8)	광주	·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48, 에이원타워(구, 삼성생명 빌딩) 6층
	북광주	·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17, 405호
	광주	·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(치평동) 광주광역시청 1층 채무힐링센터
	전주	·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, 3층 (금암동, 세광타워)
	순천	·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
	목포	·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
	익산	·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
	군산	·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62 (조촌동 752-4) 군산고용복지+센터 3층
제주 (2)	제주시	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+센터 3층
	서귀포	·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1층 종합민원실

* 상담시간 등 세부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(1600-5500, https://www.ccrs.or.kr)

□ 신용회복위원회 “채무조정” 절차

